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8. 17 선고 2021가단459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용선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7. 13.

판 결 선 고 2022. 8.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81,6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8.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 C, D은 2016. 11.경 고양시 덕양구 E 건물 4층을 임대하여 'F'라는 상호로 어린이수영장 사업(이하 '이 사건 수영장 사업'이라 한다)을 동업하기로 약정하였다.
- 당초 이 사건 수영장 사업의 동업계좌로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를 사용하였고, C가 자금관리, 집행을 하는 등 업무집행조합원의 역할을 하였다.
- C는 이 사건 수영장 사업을 위한 공사를 피고에게 맡기고, 공사대금 선금금으로 위 동업계좌로부터 2016. 12. 10. 1억 원, 같은 달 12. 4,000만 원 합계 14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 피고는 위 1억 원을 지급받은 직후 4,000만 원을 C의 우리은행 계좌로 보냈고, 그 다음날인 2016. 12. 11.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보냈다. 위 1,000만 원은 그 다음날 다시 위 동업계좌로 이체되었다.
- 피고는 2016. 12. 27. 위 공사를 타절하고, 원고에게 51,015,000원을 반환하였다. 그리고 그 무렵부터 원고가 업무집행조합원 역할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을14호증,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및 쟁점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공사대금 선금금으로 합계 140,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공사타절시까지 수행한 공사의 금액은 735만 원(= 가스 철거비 60만 원 + 구조물 철거 5,096,000원, 자재구입비 1,654,000원)이다.

그리고 피고가 C의 우리은행 계좌로 합계 5,000만 원을 보낸 것은 위 동업사업 조합체와는 무관하고, 피고와 C 사이의 개인적 금전거래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업무집행조합원인 원고에게 81,635,000원(= 140,000,000원 - 51,015,000원 - 735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공사대금 선금금으로 받은 140,000,000원 중 5,000만 원을 C에게 반환하였다. 그리고

피고와 C는 피고가 공사타결시까지 수행한 공사의 금액을 38,985,000원으로 하여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51,015,000원(= 140,000,000원 - 5,000만 원 - 38,985,000원)을 반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더 반환할 돈은 없다.

(3) 쟁점

- 피고가 C에게 5,000만 원을 반환한 것이 위 동업사업 조합체에 반환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와 C 사이의 개인적 거래로 인한 것인지
- 피고가 공사타결시까지 수행한 공사의 금액이 얼마인지

나. 5,000만 원 반환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공사대금 선급금 1억 원을 지급받은 후 C에게 2016. 12. 10. 4,000만 원, 같은 달 11.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우선 위 1,000만 원은 바로 다음날 위 동업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C 개인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위 동업사업 조합체에 반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을14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위 4,000만 원 또한 C 개인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위 동업사업 조합체에 반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피고에게 공사대금 선급금이 지급되기에 앞서 위 동업계좌에 2016. 12. 2. 3,000만 원, 같은 달 8. 1,000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위 3,000만 원의 출처는 거슬러 올라가면 G 명의의 농협 계좌이고, 위 1,000만 원은 원고가 처인 H 명의로 입금한 것이다. 위 G 명의의 계좌는 원고와 C가 다른 수영장 사업 관련하여 사용하는 운영계좌이다.

- 피고가 C의 우리은행 계좌로 반환한 위 4,000만 원은 같은 날 곧바로 위 G 명의의 계좌로 3,700만 원, 원고의 아들인 I의 계좌로 3,000만 원이 입금되었다. 원고가 이전에 위 G 계좌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어서, 피고가 반환한 4,000만 원은 결국 위 G 계좌로 3,000만 원, 원고에게 1,000만 원이 반환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바, 돈의 원천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사대금 선급금 중 5,000만 원을 반환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피고가 수행한 공사의 금액

을3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공사타결시까지 공사비 및 관련비용으로 합계 38,985,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도 이유 있다.

라. 소결

피고가 받은 공사대금 선급금 140,000,000원에서 실제로 수행한 공사비 38,985,000원, C에게 반환한 5,000만 원, 원고에게 반환한 51,015,000원을 모두 빼면 남는 것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더 반환할 것은 없다. 결국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예혁준